
제 안 요 청 서

2026. 9.

금융결제원 IT기획부

〈 목 차 〉

1. 개 요	1
2. 계약 대상	1
3. 주요계약조건	1
4. 추진일정	2
5. 제출서류	3
6. 업체 선정 방법	3
7. 유의사항	4

- 별첨 1. 최소구비요건
2. 보안특약
3. 제안서 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5. 청렴계약서
6. 가격입찰서

1. 개 요

- ☐ 신규 특별참가기관 전산접속용 통신장비 도입을 위한 기본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사전에 단가 및 제반사항을 정의하는 기본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1+1+1년)간 수시 발주 예정이며, 발주시 단가 및 제반사항은 본 계약을 준용하게 됨

2. 계약 대상

(단위 : 대)

대상 장비	용 도	연간수량*
VPN	금융결제원-참가기관 구간 암호·복호화 (참가기관 설치용 장비)	16

* 연간 예상치. 실제 발주수량은 이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0일 수 있음

※ 「제안요청서 - 첨부1. 최소구비요건」 참조하여, 조건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할 것

3. 주요 계약조건

- ☐ 발주서 상 금융결제원이 지정한 일자까지 장비 설치를 완료할 것
(각 발주 건의 설치완료일은 결제원과 공급업체간 발주전 협의)
- ☐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해당금액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개별 발주 건의 공급총액)의 10%(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이상
- ☐ 하자보증기간 및 무상보수정비기간 : 인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월의 말일
- ☐ 계약업체는 무상 보수정비기간 중 월 1회 이상 장애예방점검 및 보수정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못하였을 때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 공급기기(제3자 공급 S/W 포함)에 대해 무상 보수정비기간 내에 기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패치, 이전 설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상 지원할 것
- ☐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 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첨부2) 보안특약 참고)
- ☐ 계약은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 ☐ 연간 수량(VPN 16대)은 예상치이며 실제 구매수량은 이와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음
-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음 (최대 총 3년)
- ☐ 주요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 ☐ 제안서 접수 마감 : 2026. 9. 23(수) 11:00까지 금융결제원 IT기획부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
- ☐ 규격평가 및 가격입찰 : 10월 중
- ☐ 계약체결 : 10월 중

* 상기 일정은 금융결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금융결제원 소정 양식) 1부.
-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청렴계약서 각 1부.
- ☐ 제안서 4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파일) 1매.
- ☐ 견적서 1부.

* 연간 예상수량(VPN 16대)을 반영하여 작성

6. 업체 선정 방법

가. 규격입찰

- ☐ 대상업체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업체
- ☐ 적격기준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최소구비요건 및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규격입찰조서를 작성하여 충족여부 확인

나. 가격입찰

- ☐ 대상업체 : 규격입찰을 통과한 입찰참가업체
- ☐ 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유찰 시 2026. 10. 1.(목) 14:00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 ☐ 입찰방법 : 공급금액(1년 이상 무상보수정비 포함)에 대한 입찰 실시

다. 낙찰자 결정

- ☐ 금융결제원 내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하여 결정)
- ☐ 최저 가격 입찰업체의 입찰금액 총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입찰 재 실시

7.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자기앞수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납부 시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또는 이전
- 보증기간의 마감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40일 이후

나. 낙찰자 서류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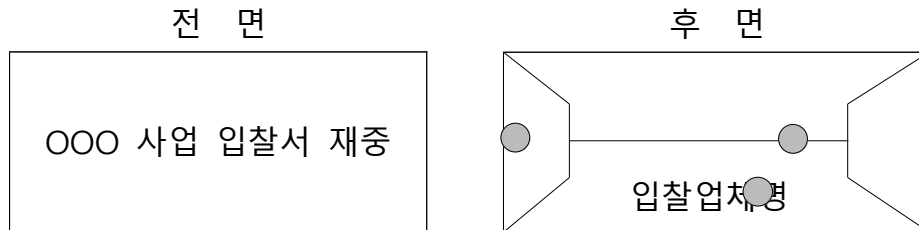
- ☐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결제원 요구시점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결제원에 귀속됨.

*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이행보증금, 원공급자 이행보증약서 등

다. 가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 ☐ 가격입찰서 기재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가격입찰서를 재교부 받도할 것
- ☐ 입찰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 ☐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할 것
- ☐ 입찰서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봉한 후 날인하여 제출할 것



-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라. 입찰무효

-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 ☐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경우
- ☐ 입찰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한 입찰
- ☐ 기타 금융결제원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마. 기 타

- ☐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업체 선정 추진과정 상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 ☐ 제안서는 제안서 양식에 준하여 제반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 ☐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 ☐ 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해당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할 것
-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함
-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할 것
- ☐ 금융결제원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 ☐ 금융결제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 제안서의 내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 것
-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금융결제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제출된 제안서는 금융결제원의 별도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 입찰 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는 추후 금융결제원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함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금융결제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금융결제원 예정가격, 계약금액 및 평가세부결과 등은 일체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금융결제원의 내부사정,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책자 형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는 금융결제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결제원의 해석에 따름

바. 문의처

- ☐ IT기획부 02) 531-1321

(별첨 1)

최 소 구 비 요 건

1. 공통사항

- ☐ 도입하는 장비는 필요시 금융위원회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지원하고, 검증과정에서 미비점 발견 시 보완조치 할 것
- ☐ 교체대상 장비에 저장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하고, 장비 반·출입 시 보안대책을 준수할 것
- ☐ 기타 사항은 금융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시행세칙, 당원 내규, 관계 법규 준수할 것
- ☐ 랙에 통신장비 장착 작업을 지원할 것
- ☐ 참가기관 설치 희망 장소에 설치 작업 지원할 것
- ☐ 장비설치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케이블 및 포설 작업, 기존 장비 및 케이블 철거 작업)를 지원할 것

2. VPN

- ☐ 국내 CC EAL2+등급 이상 획득 또는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제품일 것
 - VPN에서 암호 사용 시 검증필한 암호모듈을 탑재할 것
- ☐ 1:1, 1:N, N:N 등 다양한 NAT 기능을 지원할 것
- ☐ 포트 장애시 포트간 자동 Fail-over 기능을 지원할 것

- ☐ 여러 대의 센터VPN과 동시에 멀티터널 지원 가능(16개 이상)할 것
- ☐ CLI모드에서 동시접속 및 모든기능을 설정하고 백업할 것
- ☐ CLI모드에서 tcpdump 또는 이와 동급 이상으로 실시간 패킷 통신 조회 가능할 것
- ☐ 별도의 장비 없이 장비간 Active-Active 및 Active-Standby 구성을 지원할 것
- ☐ VLAN interface 지원 및 멀티 VRRP 설정이 가능할 것
- ☐ NTP를 통한 장비시간 동기화 지원할 것
- ☐ 로그 연동 기능(SYSLOG 2개 IP 이상)을 제공할 것
- ☐ SNMPv3를 이용한 모니터링 기능(SNMP TRAP 2개 IP 이상)을 제공할 것
- ☐ 센터VPN장비(제안장비)와 완벽하게 호환될 것

(별첨 2)

보 안 특 약

1. 계약업체는 본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문책 등 행정조치하고 “(별지 2)”의 보안 위약금을 금융결제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및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보안 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계약업체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계약 수행 중은 물론 계약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상주직원은 녹음 및 사진 등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모바일 기기 등에 설치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 사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금융결제원이 취약점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동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 1.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1)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 (별지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 시스템 구축 결과물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 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비공개 도안.설계도면 등의 정보 유출 ○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DB에 접근 및 접근시도 ○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심각"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진행 중인 계약 해지 및 입찰 참여제한 - 위규자 형사고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면직포함)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및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또는 업무용 단말기에 무단 저장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의 우회 및 우회시도 ○ 인가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 및 휴대용 보조기억매체 (USB 등)의 무단 반입.사용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요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중대	○ 인터넷용PC에 금융결제원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 ○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금융결제원이 설치한 단말기 및 모바일 기기 보안프로그램의 삭제 및 우회 시도 ○ 외주용역 단말기의 무단 반출 및 반출시도 ○ 시스템개발 시 테스트데이터가 아닌 실 업무데이터 사용 ○ 인가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접속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중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보통	○ 캐비넷.서류함.책상 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분실 ○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무단 접속 ○ PC를 켜 놓고 퇴근 ○ 단말기 패스워드 및 화면보호조치 미적용 ○ 서버 및 PC접속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 금융결제원 업무자료 등을 직원 승인없이 열람, 복사, 인쇄 ○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 “보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단말기 접속 패스워드를 “1111”등 유추하기 쉬운 값으로 부여하여 사용 ○ 외주용역 관련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 금융결제원 출입증의 책상위 등 방치 ○ 일일 보안점검표 미기재 ○ 기타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책임자가“경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조치 요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함.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 × 2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 × 10%	계약금액 × 5.0%	계약금액 × 2.5%

2. 보안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계약기간 중 발생한 위규 건별 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금융결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금융결제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9. 그 밖에 금융결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3)

※ 본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건 등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제안서 양식

1. 제안요지

※ 제안업체의 제안배경 및 제안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2. 회사소개

가. 연혁(소재지 명시)

- ☐ 설립일
- ☐ 최근 3년간 매출액
- ☐ 자본금 규모
- ☐ 신용평가 등급
- ☐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사항

나. 조직 및 인원

- ☐ 조직(전국적인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명기)
- ☐ 인력구조(전체인력 중심)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다.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라.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 기관명, 적용업무, 공급시기, 투입인력규모, 구축기간 등

3. 제안시스템 소개

※ 제안시스템에 대해 아래항목 중 해당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 (관리방안 등)을 형식에 상관없이 제안시스템별로 구분하여 기술

가. 모델명

나. 특징 및 장점

다. 제안시스템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동향

라. 제안시스템의 Life Cycle

※ 발표시기, 단종시기(계획), 지원중단시기(계획), 파손 시 대책 등

마. 시스템 구조

바. 시스템 성능

사. 시스템 확장성

※ 시스템 구성요소 중 확장 가능한 모든 요소에 대해 설명

아.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자. 제안시스템의 장애 시 장애진단·복구방법

※ 진단 및 복구 Tool, 소요시간, 지원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 등

차. 라이선스 정책

※ 일반 라이선스 정책 및 확장(추가구매), 백업시스템의 라이선스 지원 정책 등에 대하여 기술

카. 제안시스템 단종 시 지원방안

※ 시스템 인수 후 7년 이내 제안 H/W 및 S/W 단종 시 지원방안 등

타.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4. 시스템 구성 방안

- ※ 제안시스템이 설치될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구성 방안을 제시
- ※ 제안시스템 설치, 이용, 패치, 업그레이드, 이전 설치 등과 관련된 라이선스 정책을 기술(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5. 제안 시스템 품목명세

제 품 명	모 델 명	내 용	수 량

6. 설치 일정 및 절차 등

- ※ 제안요청서의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세부 계획,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기재

7. 지원 사항 및 기타

가. 인력지원 계획

- ※ 구축 시 투입 인력 및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시까지 단계별로 투입 인력 등 명시(상주, 비상주 구분 포함)
- ※ 구축 완료 후, 안정화, 기술지원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기재

나. 보수정비 지원방안

- ※ 보수정비범위(예방정비 및 장애정비 등), 계획, 절차, 수행인력 구성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재

다. 하자보증 방법

- ☐ 하자보증 주체
- ☐ 긴급을 요하는 하자정비 대책
- ☐ 하자보증 및 보수정비 기술요원 보유현황

라. 보안대책

- ※ 본 프로젝트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작성 (“(첨부 2) 보안특약” 참고)

마. 기타 지원 사항

8.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 (세부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할 것)

(예시)

구 분	세부 내용	충족여부 (O , X)
주요계약조건		○
		○
최소구비요건		○
		○

(별첨 4)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건명	신규 참가기관 전산접속용 통신장비 기본계약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률 : % ☐ 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	대리인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금융결제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 하오며, 아래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1.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서 1부 6. 제안서 4부 및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 파일) 1매 7. 견적서 1부 년 월 일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법인인감 날인 금융결제원 귀중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구분까지만 기재 (□□□□□□—□)

(별첨 5)

청 렬 계 약 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인)

금융결제원 귀중

(별첨 6)

()차 가격입찰서

[신규 참가기관 전산접속용 통신장비 기본계약, 2026. . .]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공 급 금 액 (1년 이상 무상보수정비 포함)	금 _____ 원
※ 연간 예정수량 기준 (VPN 16대)	₩ _____

상기와 같이 입찰함.

주 소 :

상 호 :

성명 :

(인)

금융결제원 IT기획부장 귀하